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성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64

발의연월일: 2024. 7. 17.

발 의 자:정성호·김남희·김정호

문진석 • 민병덕 • 민형배

부승찬 • 안태준 • 윤후덕

이연희 · 임미애 · 한정애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방위사업청은 「'18~'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」에서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였음. 이와 관련하여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방위산업계의 대·중소기업 협력 수준은 5점 만점에 2.67점에 그치고 있고, 수출액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 대기업 편중이 심한 편이라고 평가함.

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중소·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창업 및 연구개발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이어서 실효적인 지원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.

이에 국방중소·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지속적

인 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0조, 제10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의 제목 중 "성장지원"을 "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"으로 하고. 같은 조 제1항 중 "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야 한다"를 "성장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(이하 "기술혁신 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2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1항에 따른 국방중소 · 벤처기업의 성장지 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"를 "국방중소·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혁 신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"로 하고. 같 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 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10호(종전 의 제4호) 중 "성장지원을"을 "성장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기"로, "사 항"을 "사업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.

- 3.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
- 4.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 지원
- 5. 국방중소 벤처기업 발굴과 육성

- 6. 정보화 지원
- 7.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
- 8. 국제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에 대한 지원
- ③ 방위사업청장은 기술혁신지원계획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국방중소·벤처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출연, 보조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.
- ④ 방위사업청장은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원활한 수립·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중소·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단을 설치·운영할수 있으며, 국방중소·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0조의2(국방중소·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지정) ① 방위사업 청장은 국방중소·벤처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중소·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(이하 이 조 에서 "선도연구기관"이라 한다)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방위사업청장은 선도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- 2.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 - 3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

-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.
- ④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국방중소·벤처기업 <u>성장</u>	제10조(국방중소·벤처기업 <u>성장</u>
<u>지원</u>)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	<u>및 기술혁신 지원</u>) ①
중소·벤처기업의 <u>성장을 지원</u>	
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	성장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기
립하여야 한다.	위한 계획(이하 "기술혁신지원
	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ㆍ시행
	하여야 한다.
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	② <u>국방중소·</u>
른 국방중소・벤처기업의 성장	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
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	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혁신
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	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
<u>수 있다</u> .	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1.・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.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
<u><신 설></u>	4.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 지
	<u>원</u>
<u><신 설></u>	5. 국방중소·벤처기업 발굴과
	<u>육성</u>
<u> <신 설></u>	<u>6. 정보화 지원</u>
<u> <신 설></u>	7.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
	산학협력 지원
<u> <신 설></u>	8. 국제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
	에 대한 지원
<u>3.</u> (생 략)	<u>9.</u> (현행 제3호와 같음)

4. 그 밖에 국방중소·벤처기업 | 10. -----의 성장지원을 위하여 대통령 | 령으로 정하는 사항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- ---성장 및 기술혁신을 촉진
 - ----사<u>업</u>
- ③ 방위사업청장은 기술혁신지 원계획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을 <u>수행하는</u> 국방중소·벤처기업 을 선정하여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 여 출연, 보조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.
- ④ 방위사업청장은 기술혁신지 원계획의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중소 • 벤 처기업 기술혁신 지원단을 설 치 · 운영할 수 있으며, 국방중 소 · 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단 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의2(국방중소 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지정)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 · 벤 처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 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 여 국방중소 · 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(이하 이 조에서

- "선도연구기관"이라 한다)을 지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
- ② 방위사업청장은 선도연구기 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 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 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

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3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사업실적이 없는 경우
-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.
- ④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